

대구예술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5.04.02.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20.03.09.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의거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호 (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면접, 실기 등)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개정 2020.03.09.)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1) 우리 대학교 교직원
 - 2) 교육과정,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선행학습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우리 대학교 각종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항
3.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방지 방안
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겸임한다.(개정 2020.03.0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주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 (방법 및 절차)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 검토 및 개정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4.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5.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반영계획 공개

6.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한다.

제7조 (일정) ① 교육부 기준 일정을 준수한다.

② 영향평가 결과는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에서 관장한다.(개정 2020.03.0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